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76
----------	-----

2016. 04. 27.(수)
교 육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이 숙 애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2016년 04월 18일

다. 회부일자: 2016년 04월 19일

라. 상정일자: 2016년 04월 27일

(제34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이숙애 의원)

가. 제안이유

충청북도 내 학생들의 정보격차 해소와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관리하는 실효성 있는 기술적 안전조치를 취함으로써,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 (안 제2조)
- 2) 교육감의 책무로 정보화 지원의 효율성 증대와 사이버음란물, 게임중독 등의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기술적 안전조치를 규정함 (안 제3조)
- 3) 이 조례의 적용 범위를 규정함 (안 제4조)
- 4) 정보화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함 (안 제5조)
- 5) 규격 및 구매계획의 사전공지, 제품 선정방법 및 유해사이트 차단 기능 등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6조)
- 6) 개인용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7조)
- 7) 인터넷통신비 중복지급 예방과 행정비용 절감을 위한 인터넷통신사 변경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8조)
- 8) 지원컴퓨터의 불법 판매·임대, 게임·인터넷 중독의 상담·치유 서비스의 거부, 기술적 안전조치 거부 등의 지원중단 조건을 규정함 (안 제9조)
- 9) 온라인 동의 의무화를 규정함(안 제10조)
- 10)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관리를 위한 기술적 안전조치 및 사이버 음란물 차단을 위한 기술적 안전조치를 규정함(안 제11조)
- 11) 예산을 투입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술적 안전조치에 대한 자산 관리, 지원학생 낙인 부작용 예방 등을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12조)
- 12) 보직관리 및 전문직위 지정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13조)
- 13) 교육정보화지원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14조 ~ 16조)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덕환)

- 본 조례제정안은 「교육기본법」 제17조의4 및 제23조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04조의2에 따라 제공하는 충청북도 내 학교·기숙사 등의 학생용 컴퓨터와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컴퓨터에 사이버음란물과 게임중독 등의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관리하는 실효성 있는 기술적 안전 조치를 취하여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기여하며, 학생들의 정보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현재,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관리와 사이버 음란물을 차단하기 위하여 적용하고 있는 망차단방식은 오프라인 유해물을 차단하지 못하는 약점이 있어 기술적 안전조치가 강화된 방식으로 개선하여 정보화 역기능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저소득층학생의 교육정보화 지원의 효과를 증대하여 학생들의 정보격차를 줄이고, 인터넷 사용료를 지원하는 학생이 이용하는 컴퓨터와 도내 학교의 학생용 컴퓨터에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기술적 안전조치에 대한 책무와 적용대상을 명시 하였고,
- 안 제5조는 교육정보화 지원 및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 예산확보 방안과 행정적 지원방안을 수립하여 정보화 역기능 예방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6조는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제품선정 절차를 규정하고 유해사이트 차단기능을 매년 강화시키도록 노력하였으며,

특히,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서는 입찰자에 대한 평가 방법을 조례로 정할 수 없다는 집행청의 의견을 수용하여 조례안을 수정하였음.

- 안 제7조는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를 예산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였고,
- 안 제8조는 인터넷통신사를 언제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안 제9조는 지원 컴퓨터의 불법 판매 임대 방지 및 기술적 안전 조치 거부 등에 대한 온라인 동의절차를 마련하였으며,
- 안 제10조는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 관리를 위한 기술적 안전조치 방법을 설정하였으며,
- 안 제11조는 사이버음란물 차단을 위한 기술적 안전 조치방법을 제시하였고,
- 안 제12조는 통합관리시스템 자동관리 내용과 저소득층 학생의 낙인 부작용 예방을 위한 노력과 정보수집의 제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 안 제13조는 보직관리 및 전문직위 지정을 통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 하도록 노력하고, 단일 과에서 처리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으며,
- 안 제14조에서 제16조는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동 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운영사항을 명시하여 실효성 있는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였음.

- 다만, 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기술적 안전 조치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청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연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 조례 제정으로 충청북도 내 학생들의 정보화 지원사업의 효율성이 증대되어, 학생들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관리할 수 있는 기술적 안전조치를 취함으로써 우리 학생들의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되는 타당한 입법이라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수정안요지 :

가. 발의자: 이숙애 의원 등 2인

나. 발의일자: 2016년 04월 25일

다. 수정이유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발의된 이후, 충청북도교육감의 의견이 제출됨에 따라 소관부서 관계관과의 협의를 거쳐, 안 제6조(기술개발 촉진 등)에 관하여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하는 경우 그 입찰자에 대한 평가 방법을 조례로

규정할 수 없다는 충청북도교육감의 의견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안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임.

라. 수정 주요내용

가. 안 제6조(기술개발 촉진 등) 제2항 전체를 삭제하고,

나. 안 제6조(기술개발 촉진 등) 제3항을 제2항으로 함.

10.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376
----------	-----

제안연월일 : 2016년 4월 25일

제안자 : 이숙애, 이광희의원

1. 수정이유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발의된 이후, 충청북도교육감의 의견이 제출됨에 따라 소관 부서 관계관과의 협의를 거쳐, 안 제6조(기술개발 촉진 등)에 관하여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하는 경우 그 입찰자에 대한 평가 방법을 조례로 규정할 수 없다는 충청북도교육감의 의견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안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안 제6조(기술개발 촉진 등) 제2항 전체를 삭제하고,
- 나. 안 제6조(기술개발 촉진 등) 제3항을 제2항으로 함.

3.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 1) 기 간 : 2016. 2. 4. ~ 2016. 2. 23.(20일간)
- 2) 제출의견 : 특기할 사항 없음

나. 충청북도교육청 의견제출: 2016. 4. 25.

4. 수정조례안 신·구대비표 : 붙임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6조(기술개발촉진 등) ① (생략)</p> <p><u>② 제1항에 따른 제품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다만 통합관리서버는 제외한다.</u></p> <p>1. <u>평가비율 : 정량평가(90%), 가격평가(10%)</u></p> <p>2. <u>정량 경영평가 : 10%(경영상태, 기업의 신인도, 기술인력 보유 상태 및 수행경험(실적))</u></p> <p>3. <u>정량 기술평가 : 80%</u></p> <p><u>③ 교육감은 제11조에 따른 차단하는 음란동영상, 음란SNS 계정, 유해사이트 개수와 차단 기능에 대한 규격을 매년 강화시키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u></p>	<p>제6조(기술개발촉진 등) ① (제정안과 같음)</p> <p><u>② 삭제</u></p> <p><u>② (제정안 3항과 같음)</u></p>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학생들의 정보격차 해소와 그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관리하는 실효성 있는 기술적 안전조치를 취함으로써,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소득층 학생”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학생 (이하 “학생”이라 한다) 중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제1항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
2. “교육정보화 지원”이란 도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가정에서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학습을 위한 비용을 충청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학생용 컴퓨터”란 도내 학교·기숙사·도서관·직속기관 등에서 학생이 접근·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를 말한다. 다만, 교직원이 점유하는 컴퓨터는 제외한다.
4. “인터넷 중독”이란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제20호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한다.
5. “게임 중독”이란 「청소년보호법」 제27조에 따른 인터넷게임 중독을 말한다.
6. “사이버 음란물”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음란정보 및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말한다.

7. “통합관리시스템” 이란 교육청 예산을 투입하는 소프트웨어와 기술적 안전 조치의 설치·삭제를 자동 관리하고, 지원학생 낙인 부작용 예방 등 교육정보화 지원에 대해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은 저소득층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의 효과를 증대하여 학생들의 정보격차를 줄이고, 인터넷사용료를 지원하는 학생이 이용하는 컴퓨터(이하 “정보화지원 컴퓨터” 라 한다)와 학생용 컴퓨터에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기술적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조(적용 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도내 저소득층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2. 제2조제3호에서 정한 도내 학교·기숙사 등의 학생용 컴퓨터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제4조제1호의 교육정보화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예산 확보 방안
2. 행정적 지원 방안
3. 해당 컴퓨터의 구매규격 제정, 정보화 역기능의 예방·관리 및 강화 방안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기술개발촉진 등) ① 교육감은 제7조, 제10조부터 제12조에 대하여 구매규격과 구매계획을 사전에 공지하고, 입찰을 통해 해당 제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1조에 따른 차단하는 음란동영상, 음란SNS 계정, 유해사이트 개수와 차단 기능에 대한 규격을 매년 강화시키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컴퓨터·소프트웨어 지원) ① 교육감은 제4조제1호에 따라 저소득층 학생에게 개인용 컴퓨터와 지원 컴퓨터의 내구연한 동안 무상 수리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 원활한 작동과 가용성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프트웨어를 함께 지원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1. 컴퓨터를 활용하는 과제물 작성을 위한 소프트웨어
2.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방지 및 치료를 위한 백신 소프트웨어
- ③ 교육감은 정보화지원 컴퓨터의 사용기간 등을 해마다 두 차례 이상 자동 추출하여, 그 지원신청을 할 경우 사용연수의 역순으로 해당 지원 가정을 선정해야 한다.
- ④ 교육감은 컴퓨터 지원 예산의 불용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컴퓨터 지원 신청 탈락 가정 중에서 추가 선정하여 지원해야 한다.

제8조(인터넷통신사 변경) 인터넷사용료 지원가정의 해당 통신사 변경은 학년 초 해당 기관 또는 관련시스템의 교육비 신청기간과 9월 중 변경 신청을 한 때로 한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확인을 거쳐 언제나 변경할 수 있다.

1. 사용하던 인터넷통신사의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이사한 때
2. 중복고장 등으로 인한 서비스품질이 심각하게 저하된 때

제9조(온라인 동의) ① 교육감은 제4조 제1호의 교육정보화 지원 시 다음 각 호의 지원중단 조건에 대하여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14세 미만인 학생에 해당한다)의 온라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지원 컴퓨터의 불법 판매·임대
2. 지원가정의 객관적 선정을 위한 컴퓨터 사용기간 등의 자동추출 거부
3. 게임·인터넷 등의 이용습관 진단조사 및 상담·치유서비스의 거부
4. 정보화역기능 예방·관리를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활용 및 기술적 안전조치의 설치 거부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지원중단 조건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기술적 안전 조치 설치를 거부하는 가정에 대하여는 인터넷사용료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신청 탈락가정 중에서 추가 선정하여 그 사용료와 컴퓨터를 추가 지원해야 한다.

제10조(인터넷·게임 중독 예방·관리) ① 교육감은 정보화지원 컴퓨터와 학

생용 컴퓨터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관리를 위한 제2항의 기술적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인터넷 강의 수강을 위한 24시간 학습전용 기능을 제공한다.

② 교육감은 제14조에 따른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정보화지원 컴퓨터에 학생별 게임과 인터넷의 일일 최대이용 및 심야이용제한 시간을 자동 설정해야 한다.

제11조(사이버음란물 차단) ① 교육감은 사이버음란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적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인터넷을 통한 음란동영상 시청 차단
2. 저장장치를 통한 불법동영상 시청 차단
3. 암호화 기법을 적용한 음란 SNS(Social Network Service) 계정 차단
4. SSL(Secure Socket Layer) 프락시 사이트 및 우회접속 프로그램 프로세스 차단
5. 웹브라우저의 플러그인 우회접속 기능과 번역기를 이용하는 경우 불법·유해사이트 차단. 다만, 해당 사이트가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6. 차단회피 신기술에 대한 신속한 차단기능 업그레이드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기술적 안전조치로 사이버음란물을 차단할 경우에는 컴퓨터모니터에 차단안내 문구를 일정한 크기 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③ 제1항의 안전조치를 구현할 경우 사생활과 민감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HTTPS 등의 통신규약을 사용하는 기술 및 사이트를 평문으로 복호화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12조(통합관리시스템 관리) ① 교육감은 지원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술적 안전조치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현황 등을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자동 관리해야 한다.

1. 정보화지원 대상자 및 지원컴퓨터 현황
2. 제7조제2항의 소프트웨어의 설치 및 삭제현황

3. 제7조제3항의 컴퓨터 사용기간 및 CPU종류 현황

4. 제10조 및 제11조의 기술적 안전조치의 설치 및 삭제현황

5. 교원업무 경감을 위한 수작업업무 전산화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시스템을 관리를 통한 저소득층 학생의 낙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다음 각 호를 조회·보관해서는 안된다.

1. 접속·차단하는 사이트 주소

2. 교육감이 미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정보

3. 학생별 컴퓨터·게임·인터넷의 이용시간

제13조(보직관리 및 전문직위지정 등) 교육감은 조례에서 정한 사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교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보직부여 및 전문직위로 지정과 해당업무를 단일 과에서 통합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컴퓨터공학, 네트워크보안, 단말보안, 게임중독 등을 전공한 석·박사 학위 보유자

2. 정보통신, 정보보안, 네트워크 관련 기사·기술사 자격 보유자. 다만 기사 수준 이상의 외국자격을 포함하며, 정보처리 기사는 제외한다.

제1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관리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지원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한다.

1. 제10조제2항의 시간 결정

2. 교육정보화 지원사업의 평가·개선방안

3. 정보화역기능의 예방·관리 및 규격 강화방안

4. 그 밖에 교육감 및 위원장이 교육정보화에 관한 업무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이 경우 위원장을 호선(互選)하는 회의는 소관업무담당 국장이 주재한다.

③ 위원은 교육감이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1. 정보통신 및 정보화 역기능 관련 전문가와 전문기관 및 학술단체 소속 임직원

2. 교육관련 시민단체 소속 회원

3.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교육청 소속 국장급 공무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16조(위원회의 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발췌

■ 교육기본법 (법률 13003호 일부개정 2015. 01. 20.)

제17조의4(건전한 성의식 함양)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존엄한 성(性)을 보호하고 학생에게 성에 대한 선량한 정서를 함양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학생 개인의 존엄과 인격이 존중될 수 있는 교육적 방안과 남녀의 성 특성을 고려한 교육·편의시설 마련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3조(교육의 정보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화교육 및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한 교육을 지원하고 교육정보산업을 육성하는 등 교육의 정보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초·중등 교육법(법률 12338호 일부개정 2011. 01. 28.)

제60조의4(교육비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교육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인 학생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3. 그 밖에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 등에 따라 지원의 내용과 범위를 달리할 수 있다.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1항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961호 일부개정 2015. 01. 06.)

제104조의2(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① 법 제60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이하 “교육비“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입학금 및 수업료
2. 학교급식비
3. 학교운영지원비
4. 교과용 도서 구입비
5. 가정에서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학습을 위한 교육 정보화 지원비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비용

■ 청소년 보호법(법률 1269호 일부개정 2014. 05. 28.)

제2조(정의)

3.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제7조제1항 본문 및 제11조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나.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11조에 따라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심의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자·통신기술 및 의약품 등의 발달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들 매체물과 약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사업의 지원, 국가 간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유해 환경 감시·고발 활동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민간의 건의사항을 관련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규제할 때 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 ①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제7조에 따른 심의를 할 때 매체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1.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제27조(인터넷게임 중독 등의 피해 청소년 지원)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터넷게임 중독 (인터넷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하여 인터넷게임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 손상을 입은 것을 말한다) 등 매체물의 오용·남용으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하여 예방·상담 및 치료와 재활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13344호 일부개정 2015. 06. 22.)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 전기통신사업법(법률 12761호 일부개정 2014. 10. 15.)

제32조의7(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 ①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12844호 타법개정 2014. 11. 19.)

제12조의2(게임과몰입의 예방 등) ① 정부는 게임 과몰입이나 게임물의 사행성·선정성·폭력성 등(이하 “게임과몰입등“이라 한다)의 예방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게임과몰입등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게임과몰입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책대안의 개발
3. 게임과몰입등의 예방을 위한 상담, 교육 및 홍보활동의 시행
4. 게임과몰입등의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5. 게임과몰입등의 예방을 위한 전문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게임과몰입등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국가정보화 기본법(법률 11849호 타법개정 2013. 06. 05.)

제30조의6(인터넷중독대응센터)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인터넷중독대응센터(이하 “대응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대응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터넷중독자에 대한 상담 및 치료
2.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에 관한 교육·홍보
3. 그 밖에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그 밖에 대응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5.22.]

제30조의8(인터넷중독 관련 교육)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③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5.22.]

제31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인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4조(정보통신제품의 지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정보통신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3. 그 밖에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또는 사회적 제약으로 인하여 정보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조약 제1072호 1991.12.20. 발효)

제17조 당사국은 대중매체가 수행하는 중요한 기능을 인정하며, 아동이 다양한 국내적 및 국제적 정보원으로부터의 정보와 자료, 특히 아동의 사회적·정신적·도덕적 복지와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와 자료에 대한 접근권을 가짐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 가. 대중매체가 아동에게 사회적·문화적으로 유익하고 제29조의 정신에 부합되는 정보와 자료를 보급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 마. 제13조와 제18조의 규정을 유념하며 아동 복지에 해로운 정보와 자료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지침의 개발을 장려하여야 한다.

■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제2조(적용)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는 법령이나 조례·교육규칙 및 긴급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된 각종 위원회로 한다.

② 각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수당) ①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8.6.>

② 위원장으로부터 미리 안건을 배부 받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 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건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여비)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출장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여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충청
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0.8.6.>

1. 교육소청심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3급 공무원에 상당
하는 여비
2. 기타 각종위원회 위원 :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제5조(실비변상) 위원에게 수당 또는 여비 이외에 위원회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가 필요한 때에는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